

의안번호	2217583
의 퇴 인	박지혜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7.
추계번호	26A1506

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른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의 수립, 산업그린전환 실태조사, 산업그린전환위원회 설치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4,600만원, 2031년 1억 4,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 3,000만원(연평균 1억 6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—	100	—	—	—	100	20
산업그린전환 실태조사(안 제8조)	130	130	130	130	130	650	130
산업그린전환위원회(안 제9조)	16	16	16	16	16	80	16
합 계	146	246	146	146	146	830	166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의 수립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, 산업그린전환 촉진사업,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산업그린전환 시행계획의 수립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그린전환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7조(산업그린전환을 위한 비용 예측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산업그린전환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산업그린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- 1.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설비 구축 및 운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비용 - 2. 산업그린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및 사회적 전환 비용 - 3.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- 4.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에 수반되는 경제적·사회적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바탕으로 산업그린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8조(산업그린전환 실태조사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산업그린전환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5	안 제9조(산업그린전환 위원회)	○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그린전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○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6	안 제10조(민간의 업종별 로드맵 제언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업종별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배출 규모, 에너지 소비 특성, 전환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철강·석유화학 등 산업그린전환이 필요한 주요 분야 및 업종 분류 체계(이하 “전환분류체계”라 한다)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(제2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업종별 로드맵 작성 및 제안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5항)	
7	안 제13조(산업그린전환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산업그린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에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－ 2.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－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업종별 로드맵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천과제에 따라 산업그린전환을 이행하는 기업(이하 “이행기업”이라 한다)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시책을 수립하여야 함(제4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8	안 제15조(금융기관의 금융지원사업 등)	○ 금융기관은 이행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금융기관은 제24조에 따른 이행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.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와 연동하여 최대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9	안 제17조(그린전환사업장 구축 및 확산 촉진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변화유발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한 그린전환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1. 생산공정 개선 - 2.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·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- 3. 친환경 제품의 생산 - 4. 친환경 연료 및 원료로의 대체 - 5. 작업조건의 개선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그린전환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- 1. 제조사업장의 산업그린전환 수준에 관한 진단 - 2. 제조사업장의 산업그린전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- 3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- 4. 그린전환생산설비 및 그린전환생산기술에 관한 지원 - 5. 그린전환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- 6. 그 밖에 그린전환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
10	안 제18조(산업그린전환 경영 촉진정책의 마련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등의 산업그린전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기업 간 산업그린전환 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- 2.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산업그린전환 경영 지원 사업 - 3.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·단체·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1	안 제19조(산업그린전환 경영에 관한 진단·지도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·중견기업의 산업그린전환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그린전환 경영에 관한 진단·지도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2	안 제21조(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등 지원)	○ 정부는 기업이 산업그린전환 실천과제 및 업종별로드맵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1.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생산공정 개선 - 2.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설비 개조, 신설 또는 증설 - 3. 그린전환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	
13	안 제22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에 대하여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4	안 제23조(경쟁입찰 방식의 지원대상 선정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시책을 고려하여 산업그린전환의 목표와 총 지원금을 설정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15	안 제24조(이행협약의 체결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이행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목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16	안 제25조(이행협약의 이행점검 및 평가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이행협약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이행협약의 점검 및 평가를 제64조에 따른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17	안 제26조(이행점검에 따른 사후조치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목표달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8	안 제27조(기업의 자발적 산업그린전환 선언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발적 선언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64조에 따른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19	안 제28조(자발적 선언 기업 등에 대한 지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자발적 선언을 한 기업에 대하여 그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자금, 기술, 인력, 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0	안 제29조(자발적 선언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)	○ 자발적 선언을 한 기업은 3년마다 이행 실적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자발적 선언 검증기관(이하 “자발적 선언 검증기관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함(제2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자발적 선언의 신뢰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검증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,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제28조에 따른 지원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21	안 제34조(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체를 산업그린전환아카데미(이하 “그린전환아카데미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음(제2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전환아카데미로 지정된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22	안 제35조(산업그린전환 정보 생산·관리 및 활용촉진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·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그린전환 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함(제2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23	안 제36조(산업그린전환의 표준화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모델 개발·이전·확산과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그린전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음 － 1. 산업그린전환 표준의 개발·보급 및 확산 － 2. 산업그린전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·보급 및 확산 － 3. 산업그린전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－ 4.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24	안 제37조(통계작성 및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해 산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관리)	업그린전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하여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함(제1항)	
25	안 제38조(산업그린전환 저변의 확충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그린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그린전환 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음 － 1. 산업그린전환의 필요성 및 산업그린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(提高) － 2. 산업그린전환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 － 3. 산업그린전환의 중요성 전파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그린전환문화공간 설치·운영 － 4.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저변확충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26	안 제39조(산업그린전환 국제협력사업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·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·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국제산업그린전환협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국제산업그린전환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.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제산업그린전환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7	안 제40조(국제 환경규제 대응시책의 추진)	○ 정부는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·단체·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8	안 제41조(산업그린전환경영에 관한 교육·홍보 등)	○ 정부는 산업그린전환경영에 관한 지식·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·대학·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산업그린전환경영에 관한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정부는 산업그린전환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산업그린전환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2항)	
29	안 제42조(산업그린전환 산업의 육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산업그린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－ 1. 그린전환생산설비 제조사업 － 2. 제조공정 효율화 및 탄소 저감 설비 제조사업 － 3. 그린전환기술 개발사업 － 4. 산업그린전환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·분석·진단·상담·정보 제공·교육 등의 의무(役務)를 제공하는 사업(이하 “산업그린전환 컨설팅 사업”이라 한다) － 5.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의무규정
30	안 제43조(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)	○ 정부는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그린전환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○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·사업자 등이 산업그린전환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31	안 제45조(산업그린전환 선도제품에 대한 지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하여 혁신성 및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산업그린전환 관련 설비 및 제품(이하 “선도제품”이라 한다)의 개발·실증·상용화 및 보급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－ 1.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우선 지원 － 2.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－ 3. 성능 평가, 인증 및 표준화 지원 － 4.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지원 － 5.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－ 6. 그 밖에 선도제품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	재량규정
32	안 제49조(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, 특정 산업이나 기업 및 지역 등이 일방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수립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산업그린전환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·업종, 지역, 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(제2항)	
33	안 제51조(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등이 산업그린전환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4	안 제52조(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지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그 효과를 평가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5	안 제53조(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·단체·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36	안 제54조(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－ 2.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－ 3.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	재량규정
37	안 제55조(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)	○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8	안 제56조(자원효율등급제 운영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제품환경규제 대응과 자원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량이 많고 상당량의 자원을 소비하는 소재·부품·제품 중 자원의 이용 효율 관리가 필요한 자원효율관리품목을 지정하고,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(이하 “제조·수입업자”라 한다)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원효율을 평가하여 표시하는 제도(이하 “자원효율등급제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9	안 제57조(자원효율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효율이 우수한 자원효율관리품목(이하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“자원효율우수제품”이라 한다)을 고시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자원효율우수제품의 생산·수입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·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(제2항)	
40	안 제58조(생태산업개발의 촉진)	○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1	안 제59조(그린전환산업단지의 지정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산업그린전환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(이하 이 조에서 “산업단지지정권자”라 한다)와 협의하여 그린전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그린전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,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(제2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58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그린전환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42	안 제60조(그린전환생산설비,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그린전환생산설비,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린전환생산설비,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·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
43	안 제61조(재생원료의 인증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또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부품·제품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 등에 관하여 인증(이하 “재생원료인증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원료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재생원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6항)	재량규정
44	안 제64조(국가산업그린 전환진흥원의 설립 등)	○ 산업그린전환 기술의 보급, 기업의 산업그린전환 경영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그린전환 기술의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(제1항) ○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5	안 제65조(재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. 이 경우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－ 1. 산업그린전환 관련 시설투자 및 설비자금 지원 － 2.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융자·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－ 3. 기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한 보조금 지원 － 4. 자발적 선언 기업에 대한 지원 － 5. 산업그린전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－ 6. 산업그린전환 기반조성 사업 － 7. 산업그린전환 신시장 육성 및 선도제품 지원 － 8. 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－ 9.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및 지원 사업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10.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지원 사업 - 11.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 촉진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
46	안 제67조(허위 산업그린전환 조사 및 공표)	○ 정부는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산업그린전환 경영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표시한 경우 - 2.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실과 다르게 산업그린전환 경영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- 3. 기업의 홍보나 판매하는 제품 등에 산업그린전환 경영으로 위장하는 경우	재량규정
47	안 제68조(보고 및 검사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의 촉진 및 순환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자, 진흥원, 추진본부 등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, 사업장,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48	안 부칙 제6조(진흥원의 설립준비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함(제1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산업그린전환 기본 계획의 수립)	○	—
2	안 제6조(산업그린전환 시행 계획의 수립)	X	○ 산업그린전환 시행계획은 안 제5조의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, 별도의 비용 없이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
3	안 제7조(산업그린전환을 위한 비용 예측 등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4	안 제8조(산업그린전환 실태 조사)	○	—
5	안 제9조(산업그린전환위원회)	○	—
6	안 제10조(민간의 업종별 로드맵 제언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7	안 제13조(산업그린전환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등)	X	
8	안 제15조(금융기관의 금융지원사업 등)	X	
9	안 제17조(그린전환사업장 구축 및 확산 촉진)	X	
10	안 제18조(산업그린전환 경영 촉진정책의 마련 등)	X	
11	안 제19조(산업그린전환 경영에 관한 진단·지도)	X	
12	안 제21조(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등 지원)	X	
13	안 제22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	X	
14	안 제23조(경쟁입찰 방식의 지원대상 선정)	X	
15	안 제24조(이행협약의 체결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6	안 제25조(이행협약의 이행점검 및 평가)	X	
17	안 제26조(이행점검에 따른 사후조치)	X	
18	안 제27조(기업의 자발적 산업그린전환 선언)	X	
19	안 제28조(자발적 선언 기업 등에 대한 지원)	X	
20	안 제29조(자발적 선언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)	X	
21	안 제34조(산업그린전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)	X	
22	안 제35조(산업그린전환 정보 생산·관리 및 활용촉진)	X	
23	안 제36조(산업그린전환의 표준화)	X	
24	안 제37조(통계작성 및 관리)	X	
25	안 제38조(산업그린전환 저변의 확충)	X	
26	안 제39조(산업그린전환 국제협력사업)	X	
27	안 제40조(국제 환경규제 대응시책의 추진)	X	
28	안 제41조(산업그린전환경영에 관한 교육·홍보 등)	X	
29	안 제42조(산업그린전환 산업의 육성)	X	
30	안 제43조(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)	X	
31	안 제45조(산업그린전환 선도제품에 대한 지원)	X	
32	안 제49조(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)	X	
33	안 제51조(정의로운 전환 지원사업)	X	
34	안 제52조(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지원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35	안 제53조(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)	X	
36	안 제54조(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)	X	
37	안 제55조(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)	X	
38	안 제56조(자원효율등급제 운영 등)	X	
39	안 제57조(자원효율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등)	X	
40	안 제58조(생태산업개발의 촉진)	X	
41	안 제59조(그린전환산업단지의 지정 등)	X	
42	안 제60조(그린전환생산설비, 재제조 제품 및 우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등)	X	
43	안 제61조(재생원료의 인증 등)	X	
44	안 제64조(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의 설립 등)	X	
45	안 제65조(재원)	X	
46	안 제67조(허위 산업그린전환조사 및 공표)	X	
47	안 제68조(보고 및 검사)	X	
48	안 부칙 제6조(진흥원의 설립 준비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부 등은 다수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개정안 관련 산업통상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부 소관)
(단위: 백만원)

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결산	2026 예산
안 제8조 (산업그린전환 실태조사)	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(통계 작성)	631	621	557	557
안 제13조 (산업그린전환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등)	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 트용자지원	115,230	223,600	217,000	172,050
안 제17조 (그린전환사업장 구축 및 확산 촉진)	청정제조기반구축(R&D)	1,982	1,982	1,982	1,982
안 제18조 (산업그린전환 경영 촉진정책의 마련 등)	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(대규모혁신기술설비도 입지원-산업공급망탄소 파트너십)	—	—	—	10,500
안 제21조 (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등 지원)	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(산업계감축인프라지원)	2,200	2,200	2,200	2,200
	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(대규모혁신기술설비도 입지원-배출권거래제기 반구축(산업)_외부인증)	715	984	639	532
안 제24조 (이행협약의 체결)	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(탄소중립설비투자프로 젝트경매시범사업)	—	—	—	25,000
안 제36조 (산업그린전환의 표준화)	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(산업계기후변화대응기 반구축및경쟁력제고)	761	761	570	570

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결산	2026 예산
안 제37조 (통계작성 및 관리)	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(온실가스통계및분석체 계구축)	1,153	890	771	771
안 제40조 (국제 환경규제 대응시책의 추진)	국제탄소무역규제대응	1,768	1,368	1,600	1,600
안 제43조 (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)	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 트제조기술(R&D)	5,529	2,765	2,765	5,529
	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 프라밋기반기술개발(R& D)	5,297	2,555	2,560	2,048
	시멘트원료(석회석)대체 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(R &D)	4,646	2,743	3,955	3,560
	글로벌탄소규제대응수요 연계형기술개발(R&D)	—	—	—	2,000
	급속충전용내구성고안전 이차전지소재및셀개발(R &D)	—	—	—	4,500
	지속가능항공유(SAF)의 안정적생산을위한신원료 확보및전처리기술개발(R &D)	—	—	—	5,000
	탄소제로섬유패션산업생 태계전환을위한핵심기술 개발사업(R&D)	—	—	—	3,800
	한국형수소환원제철실증 기술개발(R&D)	—	—	—	6,000
	화학산업친환경규제선제 적대응을위한신격차소재 기술 개발(R&D)	—	—	—	50,146
	세라믹분야스마트그린제 조혁신지원사업(R&D)	2,000	1,233	1,233	2,052
	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 가스기반청정연소기술개 발(R&D)	—	—	3,500	6,250
	탄소저감을위한건식기반 음극전극소재및공정기술 개발(R&D)	—	—	—	5,500

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결산	2026 예산
	데이터센터탄소중립을위 한열관리기술개발사업(R &D)	—	—	—	1,600
	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 발(R&D)	40,996	82,366	128,652	124,289
	석유화학무탄소연료기반 NCC공정기술개발사업(R&D)	—	—	4,410	8,152
안 제45조 (산업그린전환 선도제품에 대한 지원)	바이오유래고분자시장활 성화를위한원료생산및제 품고부가가치기술개발(R& D)	—	—	—	6,000
	자동차핵심부품용탄소배 출저감특화철강판재기술 개발사업(R&D)	—	—	—	4,500
	글로벌진출형탄소순환바 이오산업소재제품개발및 실증(R&D)	—	—	—	3,560
안 제49조 (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)	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	400	—	—	1,300
안 제53조 (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)	탄소중립사업화지원	3,900	3,750	3,000	3,000
	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 부가소재화기술개발(R& D)	—	—	—	4,000
안 제54조 (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)	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 료화기술개발사업(R&D)	6,500	4,050	5,050	4,235
안 제55조 (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)	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 혁신기술개발(R&D)	4,806	2,608	4,108	4,527
안 제59조 (그린전환산업단지의 지정 등)	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(산업단지탄소중립지원)	61,350	117,850	122,050	125,750
안 제61조 (재생원료의 인증 등)	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(순환경제산업현황조사 및제도활성화)	1,992	2,632	2,632	2,632

자료: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안 제5조(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의 수립), 안 제8조(산업그린전환 실태 조사), 안 제9조(산업그린전환위원회)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함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다만,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안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한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으로 보므로 안 제5조에 따른 연구용역은 2028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유사 연구용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에 1억원으로 예상됨
 - 유사 사례로는 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16년, 1억 4,000만원), “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제도 기반조성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22년, 7,455만원) 등이 있음

[표 3]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—	100	—	—	—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산업그린전환 실태조사(안 제8조)

- 안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산업그린전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동 실태조사는 5년마다 수립하는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뿐 아니라 매년 수립하는 산업그린전환 시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한편, 산업통상부는 현행법 제3조의2(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), 제7조(청정생산지원센터) 및 제20조(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) 등에 근거하여 “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”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¹⁾ 동 사업 내에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나(2026년 예산 5억 5,700만원), 이와 별도로 개정안의 산업그린전환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유사 연구용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산업그린전환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억 3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유사 사례로는 “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 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19년, 1억 1,760만원), “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”(재정경제부, 2022년, 1억 6,036만원) 등이 있음

1)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(실태조사의 대상 등) ①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

1.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, 자원생산성,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
2.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
3.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,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
4. 재제조산업, 청정건설업,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
5.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
6.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표 3] 산업그린전환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산업그린전환 실태조사 (안 제8조)	130	130	130	130	130	650	1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산업그린전환위원회(안 제9조)

□ 안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산업그린전환위원회를 두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산업그린전환위원회 설치로 회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며, 동 비용은 민간위원회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함
- 안 제9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경우 개정안은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□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산업그린전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,600만원(16명×25만원×4회)으로 추계됨

-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정원의 과반인 16명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안 제9조제2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 - － 안 제9조제1항에 따르면,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
 1. 기본계획 수립
 2.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
 3.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국가비전 수립
 4.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사업 실시에 따른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대책
 5. 산업그린전환 관련 제도 신설·변경
 6.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
 7. 산업그린전환 관련 입찰 및 실행 협약 모델 검토 및 승인

8. 산업그린전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
9.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로드맵 제안에 대한 승인
10. 산업그린전환 정책관련 공급망의 범위 설정
11. 그 밖에 산업그린전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표 4] 산업그린전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산업그린전환위원회(안 제9조)	16	16	16	16	16	80	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